

평창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민간위탁 운영동의(안)

의안 번호	2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14. 7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을 도입 제공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.

□ 주요내용

1. 민간위탁 개요

- 위 탁 기 간 : 위·수탁일로부터 3년간
- 위탁 대상자 : 평창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·단체
- 위탁사무
 -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(장애인콜택시) 3대 운영 및 관리
 - ※ 향후 증차 시 증차 차량 포함
 - 이용요금 수납 등 회계업무 수행

2. 위탁기관의 선정

- 위탁자 선정 :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심사에 의한 공개경쟁 모집
- 위탁자격
 - 공고일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·단체
-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: '14 8월중
-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14. 9월중
- 위탁개시 : '14. 10월

3. 위탁사업비 및 수입금 관리

- 위탁사업비는 분기별로 위탁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, 인건비 외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
- 운송수입금은 매월 정산하여 평창군 세외수입으로 처리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

-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선량한 관리로서의 의무
 - 군수의 승인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양도 불가
 - 수탁재산(장애인콜택시)의 손해 및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
 - 계약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
- ※ 자세한 위·수탁에 관한 내용은 위·수탁계약 시 명기

□ 관계법령
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등)
- 평창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제14조(관리 및 운영의 위탁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(수탁기관 선정)

[관계법령 발췌]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④ 특별교통수단(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)이나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(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)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,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·광역시·도까지로 할 수 있다.

⑥ 국가 또는 도(道)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,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,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

제12조(관리 및 운영의 위탁)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

2. 제13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

3. 이동지원센터의 운영

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·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 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자치단체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10조(협약체결등)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